
I. 보험제도 변화

1. 회계 및 계리제도 변경

가.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(LAT) 선진화

-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(LAT: Liability Adequacy Test)를 개선할 예정이며, 2013년 1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임.
 - 향후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2단계('18년 도입 예정)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- 미래 현금유출·현금유입 산출 세부기준과 미래 자산 이익률 산출 세부기준을 마련하며,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임.

나. RBC제도 개선방안 마련

-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RBC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RBC비율 상승 및 가용자본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, 안정적인 듀레이션 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도 기여함.
 - 신종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하여,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값을 적용(부동산프로젝트금융(PF)과 동일 수준)함.

-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 정도에 따라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, 기준 적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이율 기준에서 공시 기준이율 기준으로 변경함.

다. 보험회사 연결방식 지급여력(RBC)제도 시행계획

- 연결방식 RBC비율은 자회사의 자산,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서,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연결RBC비율에 반영 가능함.
 -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(요구자본)이 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반면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함.
 -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(contagion effect)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라.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¹⁾

-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과 관련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함.
 -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부동산업의 자회사 설립 절차를 현행 금융위원회 ‘승인’에서 ‘신고’로 간소화함.
 -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(A- 이상)을 지닌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.
 - OECD국가 이외에도 신용등급 AA- 이상인 국가의 통화와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해서 환헛지 의무를 면제함.

1) 금융위원회 2013년 10월 21일 「보도자료」 참조.

-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.
 -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인식 요건을 현행 ‘15% 이상 지분 투자’에서 ‘30% 이상’으로 완화함으로써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함.
 - 동일채권 투자한도(총자산의 7%) 예외 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(MBS)을 추가함.
 -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함.

2. 상품관련 제도 및 소비자보호

가. 생명보험 및 질병·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

- 생명보험 및 질병·상해보험(손해보험 회사용) 표준약관 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 전면개정(안)을 마련함.
 -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조항을 재배치하고 “용어 정의” 조항을 신설하며 전문용어를 순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함.
 -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신청 대상 확대, ‘통지 도달간주’의 효력요건 명확화,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해지권 제한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함.

나. 소비자 보호 강화²⁾

- 보험 광고, 모집, 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와 꺾기 규제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.
 -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하고, 승환계약 시 증빙

2) 금융위원회 2013년 10월 21일 「보도자료」 참조.

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,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500인 이상)의 경영공시를 확대하는 등 보험모집과 관련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함.

- 차주의 관계인³⁾에 대한 보험판매도 “꺾기”로 규제하고, 중소기업·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 내 보험을 판매하면 “꺾기”로 간주함.
- 보장하지 않는 사항, 청약철회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 및 속도를 해당 상품의 본 광고 음성강도 및 속도와 같게 하도록 규제함.

3)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·직원 및 그 가족을 말함.